

심의위원 회피신청서

본인은 「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안전의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.

○ 안전명:

○ 회피사유:

※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5.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
6. 해당 안전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

20 년 월 일

소 속 :

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
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